

간호대학 전임교원 인사관계 세칙

제정	1992.	7.	7.
개정	1997.	3.	28.
개정	1998.	12.	1.
개정	2002.	1.	24.
개정	2003.	4.	7.
개정	2004.	3.	29.
개정	2005.	4.	12.
개정	2005.	8.	29.
개정	2006.	7.	20.
개정	2008.	4.	15.
개정	2009.	9.	17.
개정	2010.	9.	28.
개정	2011.	3.	3.
개정	2014.	3.	13.
개정	2014.	10.	2.
개정	2015.	5.	31.
개정	2015.	9.	3.
개정	2019.	1.	29.
개정	2019.	4.	18.
개정	2022.	12.	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이하 “교원인사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기준) 교원의 자격기준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다만, 간호학 전공자는 최소한 2년 이상의 임상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2장 신규채용

제3조(신규채용교원의 직명별 최저소요경력) 신규채용교원의 직명별 최저소요 교육경력 또는 연구경력 연수는 대학졸업자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경력 이상으로 한다.

1. 교수: 14년
2. 부교수: 9년
3. 조교수: 4년

제4조(신규채용후보자 심사) ① 심사는 기초 및 전공심사(1단계), 면접심사(2단계) 두 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실시하며 기초 및 전공심사 45%(연구실적 30%, 총괄연구업적 15%), 면접심사 55%(공개발표 25%, 교육 및 연구계획 20%, 임용적합성 10%)로 평가한다.

② 연구실적물 심사와 총괄연구업적 심사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1단계 평가 점수로 하되, 전공 부분의 모집분야에 대한 적합성 또는 최근 3년 이내의 연구실적물 평가에서 각각 부적격 처리된 경우 그 이후 심사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5조(연구실적물의 범위, 인정 및 인정점수) ① 연구실적물의 범위는 전공분야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출판된 학술저서
 2. 국내외 공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온라인 게재 포함)(개정 2014.10.2.)
 3. 박사학위 취득 논문
-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학술지 등에 발표되지 아니한 연구실적물을 제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행기관 책임자가 발급한 게재예정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실적물에 대한 인정 여부 및 인정기한 등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심사가 끝난 최종본 상태에서 출판예정일이 결정된 논문만을 접수하며, 게재예정증명서는 이러한 사실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함.
 2.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논문은 발간 즉시 제출하되, 임용예정일 전일까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3. 게재된 연구실적물은 응모 시 제출한 연구실적물과 동일하여야 함(추가·삭제·수정 불인정)
- ③ 제1항에 규정된 연구실적물의 인정점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3인 이상의 공동연구라도 제1저자 또는 논문에 명기된 교신저자인 경우에는 70점으로 한다.
1. 단독연구 : 100점
 2. 2인 공동연구 : 70점
 3. 3인 공동연구 : 50점
 4. 4인 이상 공동연구 : 30점

제6조(연구실적물의 요건) ① 지원마감일이 속하는 월 기준 3년 이내에 출판이 확정된 단독 연구논문 또는 공동연구의 제1저자·교신저자 논문 2편 이상(이중 SCIE/SSCI 1편 이상)을 포함하여 200점 이상 400점 이하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실적물 등의 심사위원) 연구실적물 심사위원은 간호대학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으로부터 많은 후보자를 추천받아 전공분야의 위원 5명을 학장이 지명하여 심사하되, 심사대상자의 임용예정 직급 이상으로 위촉하고 그 중 2명 이상은 타교 교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 제8조(연구실적물 등 심사)** ① 최근 3년 이내 연구실적물의 전공부분 모집분야에 대한 적합성은 제출된 연구실적물을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가하고 심사위원별 평균을 낸 후, 심사위원별 평균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3명의 평균이 2.0이상이면 적격으로 인정하고 2.0 미만 일 때 부적격 처리하여 이후 심사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 ② 연구실적물에 대한 내용평가는 심사위원 5명이 각자 그 내용을 수(5점), 우(4점), 미(3점), 양(2점), 가(1점) 등급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중 최고 및 최저등급의 평가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평가를 평균한 것을 그 실적물의 내용평가 점수로 하며 4.0 이상이면 적격으로 인정하고 4.0 미만이면 부적격 처리하여 이후 심사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 ③ 제출된 400점 이하의 연구실적물을 평가한 후 내용평가가 우수한 순서대로 200점 이상이 될 때까지의 실적물을 최종 평가 대상으로 한다. 다만 내용평가 평균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인정점수가 높은 것부터 최종 내용평가에 반영한다.
- ④ 총괄연구업적에 대한 심사는 인사위원회 위원이 [별첨 1] 서식의 각 항목을 6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평균한 것을 취득점수로 한다.

제9조(면접심사대상자 선정) 면접심사대상자 선정은 1단계 평가결과에 의하여 모집인원의 3배수 이내의 심사 대상자를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0조(면접심사)** ① 면접심사는 공개발표 평가, 교육 및 연구계획 평가, 임용적합성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② 공개발표 평가는 영어로 1회의 공개발표회를 통해 심사하며 간호대학 전체 교수가 심사위원으로서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 [별첨 2] 서식의 각 항목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최고 및 최저점수의 평가 각 2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평균한 것을 취득 점수로 한다.(개정 2009.9.17.)
- ③ 교육 및 연구계획 평가에 대한 심사는 인사위원회 위원이 [별첨 3] 서식의 각 항목을 4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평균한 것을 취득점수로 한다.(개정 2009.9.17.)
- ④ 임용적합성 평가는 2명의 추천서(다만, 본교 출신의 경우 본 대학 교수 추천서는 제외한다.)를 참고하여 인사위원의 면접으로 실시한다. 인사위원회 위원은 [별첨 4] 서식의 각 항목을 4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평균한 것을 취득점수로 한다.

제11조(신규채용 후보자 선정) 인사위원회에서는 기초 및 전공심사 평가 결과와 면접심사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평점 80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채용에 대한 가부를 응모자 개인별 투표로 결정한다. 다만, 3차에 걸쳐서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가 없으면 임용 후보 결정을 유보한다.

제3장 재임용

제12조(재임용후보자 심사) 재임용 심사는 별표 재임용 심사평정 총괄표 및 영역별 평가표와 같이

정하여 평가한다. 이때 그 평가 결과는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동일직급에서 2회차 이후의 재임용후보자 심사에서 재임용후보자는 교수업적평가 결과 75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9.)

제13조(연구실적물 인정기간 및 편수 등) ① 재임용 심사를 위하여 재임용후보자가 제출해야 할 연구실적물 편수 및 인정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차 재임용심사: 계약임용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단독연구논문 또는 공동연구의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논문을 1편 이상 포함하여 100점 이상, 2년 초과 4년 이내인 경우에는 2편 이상 포함하여 200점 이상, 4년 초과 6년 이내인 경우에는 3편 이상 포함하여 300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내외 학계에서 탁월한 업적이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외로 한다. (개정 2019.4.18.)

2. 2회차 이후 재임용심사: 직전 계약임용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단독연구논문 또는 공동연구의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논문을 1편 이상 포함하여 100점 이상, 2년 초과 4년 이내인 경우에는 2편 이상 포함하여 250점 이상, 4년 초과 6년 이내인 경우에는 4편 이상 포함하여 450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내외 학계에서 탁월한 업적이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외로 한다.

② 연구실적물 인정범위 및 인정점수는 제5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는 준용하지 않으며, 제5조제2항제2호의 “임용예정일 전일”은 “재임용 예정일 전일”로 본다.

제14조(연구실적물 평가 등) ① 연구실적물 평가는 교원인사규정 제15조의3에 따라 심사하며, 제출된 연구실적물 중 각 편 평균 “우”이상의 평가 등급을 획득한 연구실적물이 본 세칙 제13조의 최소기준을 충족하면 적격으로 인정한다.

② 총괄연구업적에 대한 평가는 연구실적물 심사위원 및 학장, 교무부학장이 실시하며 연구실적물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한 것과 학장, 교무부학장의 평가점수의 합산을 평균한 것을 합하여 취득점수로 한다.

제4장 승진임용

제15조(승진임용후보자 심사) 평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승진임용 심사평정 총괄표 및 영역별 평가표와 같이 정하여 평가한다. 이때 그 평가 결과는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16조(연구실적물 인정기간 및 편수 등) ① 승진임용 심사를 위한 연구실적물은 교원인사규정 제28조의3을 따르되, 제출하는 모든 실적물은 SCIE/SSCI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어야 한다.

② 제1항과 더불어 간호대학 교원이 승진임용 심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아래의 요건을 추가로 만족하여야 한다.

가. 부교수 승진임용 시 : 현직급 계약임용기간 내 발표한 논문 중 단독연구논문 또는 공동연구의 제

- 1저자 또는 교신저자 논문 5편 이상 포함(JCR 상위 25% 이내 2편 포함)하여 400점 이상
- 나. 교수 승진임용 시 : 현직급 계약임용기간 내 발표한 논문 중 단독연구논문 또는 공동연구의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논문 7편 이상 포함(JCR 상위 25% 이내 3편 포함)하여 500점 이상
- ③ 제2항 각 호의 JCR 상위 25% 이내 여부는 게재연도(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연도) Journal Citation Reports의 순위로 결정하고, 해당 학술지가 여러 학문분야(Category)에 중복될 때에는 순위가 높은 것으로 인정한다.
- ④ 재임용된 교원의 연구실적물 인정 및 편수는 해당 직급의 최초 계약 시작일부터 승진임용 예정일 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이 기간이 6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승진임용예정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6년까지의 연구실적물만을 인정한다. (신설 2019.1.29.)
- ⑤ 게재예정 연구실적물과 관련하여 제5조제2항을 준용하되, 제5조제2항제2호의 “임용예정일 전일”은 “승진임용 예정일 전일”로 본다.
- ⑥ 연구실적물의 인정점수는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 제17조(연구실적물 심사 등)** ① 승진임용 연구실적물 심사의 심사위원은 3명으로 하되, 본교 이외의 학외 인사 1명이 포함되도록 하고 심사평정은 3명의 평균값으로 한다.
- ② 연구실적물 평가는 제출된 모든 연구실적물의 평가 등급이 각 편 평균 “우”이상을 획득하였을 때 적격으로 인정한다.(신설 2019.1.29.)

제18조(경력인정) 타교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 제27조 및 제28조를 따른다. (개정 2019.1.29.)

제5장 정년보장임용

- 제19조(정년보장임용후보자 심사)** ① 교수의 정년보장임용후보자 심사는 업적 평가에서 80점 이상, 연구활동점수에서 35점 이상 획득하여야 하며, 부교수의 정년보장은 연구활동점수에서 38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 ② 학장은 후보자 전공 관련 분야의 국내·외 학계 최상급 전문가 3명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 제출한다.

- 제20조(연구실적물 심사 등)** ① 정년보장임용 심사를 위한 연구실적물은 제16조를 준용한다.
- ② 정년보장임용을 위한 심사의 연구실적물 심사위원은 제17조제1항을 준용한다.
- ③ 총괄연구실적은 후보자가 본교 임용 이후 출판한 연구논문, 저서, 학술활동(학술회의, 초청강연 등)이 포함되고, 교무부학장, 학장과 연구실적물 심사위원이 각각 평가한다.

제21조(정년보장임용 심사 시기 등) 교원인사규정 제32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22조에 따른다.(개정2019.1.29.)

제22조(부교수의 정년보장임용) ① 부교수는 계약제 임용을 원칙으로 하되 간호대학에서 정한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고,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 한하여 교원인사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 임용할 수 있다.

1. 세계수준 대학의 해당분야 학술연구업적의 평균 이상인 경우
 2. 세계수준 대학에서 정년보장을 받은 경우
 3.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단체의 수상경력이 있는 경우
 4. 위 각호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업적으로 **인사위원회**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② 부교수 정년보장임용 시 추가 연구실적 요건으로 조교수 재직기간 중 발표한 단독 논문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이 **SCIE** 또는 **SSCI**급 간호·보건의료 관련 학술지에 5편이상이 게재 되어야 하며, IF가 상위 20% 이내 이어야 된다.

제23조(기타) 이 세칙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을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3.3.)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3.13.)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0.2.)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5.31.)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9.)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4.18.)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에 신규임용된 전임교원은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